

법제처 심사전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촌공간계획과)

1. 개정이유

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지역에 관광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“한계농지등 정비지구”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상한 폐지(안 제47조 별표 3)
- 나.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처리기한 설정(안 서식8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생략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없음
- 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규모란 기호(○) 중 “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”을 “이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한 60일			
신청인 (사업시행자)	주소				
	대표자 성명(법인명)				
지구 현황	지구의 명칭				
	위치				
	시 · 군 읍 · 면 외 필지				
	지구면적 (㎡)	계	㎡ (한계농지		㎡, 기타
지목별		논	㎡, 밭	㎡, 임야	㎡, 기타
지정 목적 및 사업 종류	지정 목적				
	사업의 종류				
사업비		사 업 기 간	~ 년		
지구 지정의 필요성 (사업 시행 효과)					
주요사업 내용					
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					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(사업시행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(축척 5천분의 1 지형도.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)				수수료 없 음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 시 · 군 · 구	→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시 · 군 · 구	→	결정 시 · 군 · 구	→	지정 · 고시 시 · 군 · 구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555